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59
----------	-------

발의연월일 : 2026. 6. 10.

발 의 자 : 정진욱·김 윤·허 영
양부남·이주희·박지원
이개호·서삼석·조계원
안도걸·송재봉·장종태
이재관·박균택·채현일
의원(15인)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증강 현실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교육과 기술이 융합된 이른바 에듀테크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학습 플랫폼, 학습데이터 기반 진단·평가 등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이러닝 중심의 법률체계는 위와 같이 변화된 산업 구조와 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 이러닝을 포함해 새롭게 확장·재편되는 에듀테크산업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법률을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에듀테크산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에듀테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에듀테크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 진흥을 포함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에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7조).
- 다. 에듀테크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에듀테크산업 정책협의회를 둠(안 제8조).
- 라.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의 지원, 표준화의 추진, 창업의 활성화, 우수 에듀테크 제품·서비스의 지정,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 마. 한국에듀테크산업진흥원,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에듀테크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에듀테크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 진흥을 포함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듀테크”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 등을 활용한 교수 학습 활동 및 교육의 운영 관리를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에듀테크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業)을 말한다.

- 가. 에듀테크 소프트웨어업: 클라우드,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등 에듀테크 관련 기술의 개발, 공급 및 유지보수업
 - 나. 에듀테크 관련 교육서비스업
 - 다. 에듀테크 콘텐츠업: 영상, 인터랙티브 콘텐츠, 시뮬레이션, 인공지능 기반 학습 콘텐츠 등의 개발, 제작 및 공급업
 - 라. 에듀테크 컨설팅업: 에듀테크의 평가, 자문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
 - 마. 에듀테크 하드웨어 및 시설업: 교육기관의 에듀테크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기, 장비 및 시설의 공급, 관리업
 - 바. 그 밖에 에듀테크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3. “에듀테크사업자”란 에듀테크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에듀테크기술인”이란 에듀테크 관련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도 등에 따라 역량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5. “자유이용정보”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또는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말한

다.

7.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에듀테크산업 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

1. 에듀테크사업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에듀테크에 관한 지식재산권이 국내외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2. 다양한 에듀테크 관련 사업의 창업 및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에듀테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
3. 에듀테크의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소비자가 폭넓은 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4. 에듀테크의 윤리적 사용을 촉진하여 교육의 공정성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
5.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서비스·시스템 영역을 직접 침해 및 경쟁은 지양할 것
6. 에듀테크의 확산을 통하여 글로벌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
7. 국가 교육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 및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특정 기술에 대한 종속을 방지하여 교육 주권을 수호할 것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 개발의 지원, 에듀테크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에듀테크의 차별 금지 등) ① 정부는 에듀테크라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학습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부는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에듀테크의 특성 및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에듀테크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 에듀테크 활용 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에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에듀테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에듀테크산업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에듀테크산업의 국제협력 촉진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듀테크 창업 및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6. 에듀테크 국내 및 국제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국가 교육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플랫폼 자립화 및 국외 이전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8. 에듀테크 관련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에듀테크산업 정책협의회) ① 에듀테크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에듀테크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에듀테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에듀테크산업의 기반 조성

제10조(에듀테크사업자의 신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에듀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에듀테크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사업수행실

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듀테크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술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2. 기술 협력, 기술 지도 및 기술 이전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4. 교육 데이터의 안전한 비식별화 기술 개발 및 국가 로컬 데이터

허브 구축

제13조(표준화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에듀테크 관련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듀테크 관련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플랫폼 간 데이터 이동성, 비식별화 및 데이터의 국내 저장 기준에 관한 기술 표준 수립
3. 에듀테크 관련 표준의 준수를 위한 인증 제도의 운영
4. 그 밖에 에듀테크 관련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창업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에듀테크산업 분야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에듀테크산업 분야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시·도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계획 또는 제2항에 따른 시·도별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민간과 협력하여 에듀테크 기업의 창업 및 도약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금 또는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자금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우수 에듀테크 제품·서비스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품질 등이 우수한 에듀테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수

에듀테크 제품·서비스(이하 “우수에듀테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에듀테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회 참가 등 홍보 및 마케팅, 투자유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에듀테크 관련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우수에듀테크를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조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에듀테크 우선 구매시 중소기업의 제품·서비스를 구매비율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에듀테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그 밖에 우수에듀테크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정 기준에는 기반 플랫폼의 자립도, 교육 데이터의 국내 보관 및 통제 체계 확보 여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및 교육과정 적합성 검증 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① 정부는 에듀테크의 보급 확대

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보유한 데이터의 개방, 공동 활용 및 자유이용정보의 디지털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방된 데이터와 디지털화된 자유이용정보의 축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에듀테크 데이터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 및 자유이용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법, 데이터 저장소의 설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에듀테크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에듀테크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에듀테크산업 분야 국제네트워크 구축
3. 에듀테크산업 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표준화 지원
4. 에듀테크의 해외 수출을 위한 권역별, 연령별, 분야별 현지화,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의 지원
5. 에듀테크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제18조(교육 및 홍보) 정부는 에듀테크와 관련된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 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에듀테크산업진흥원 및 에듀테크산업협회

제20조(한국에듀테크산업진흥원) ①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에듀테크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에듀테크 관련 정책연구
2. 에듀테크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
3. 에듀테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에듀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원
5. 에듀테크산업의 국제협력 촉진 및 해외진출 지원
6. 에듀테크산업의 유통시장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
7. 에듀테크기업의 창업·성장 지원

8. 그 밖에 에듀테크산업 진흥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① 에듀테크사업자는 에듀테크산업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에듀테크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 또는 진흥원으로부터 아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에듀테크 정책연구

2. 에듀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

4. 에듀테크산업 기술개발 및 표준화

5. 에듀테크산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6. 에듀테크산업 유통시장 활성화 및 마케팅

7. 에듀테크기업 창업·성장

8. 그 밖에 에듀테크산업 진흥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협회는 에듀테크산업 진흥 정책 수립과 사업 수행을 위해 진흥원과 긴밀히 협력한다.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그 밖에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에듀테크센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에듀테크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에듀테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에듀테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 중소기업·창업기업 및 교육기관의 에듀테크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2. 에듀테크를 통한 지역 공공서비스의 제공 대행
3. 지역 중소기업·창업기업의 인력 양성, 인프라 및 시설 지원
4. 그 밖에 에듀테크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에듀테크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에듀테크센터가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

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에듀테크센터의 지정요건·지정절차·운영방법, 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듀테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책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진흥원의 임직원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에듀테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듀테크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이러닝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에듀테크사업자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